

#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7. 1.      개정 2014. 3. 1.  
개정 2014. 10. 20.    개정 2015. 8. 31.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개정 2016. 7. 2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중암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 정관 제39조 및 제47조 에 의거 대경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, 입학홍보1처장, 총무처장, 기획조정실장, 산학협력처장과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5.8.31., 2016.7.28.>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년보장 임용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사 시에는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는 위원 수만큼 재적위원에서 감한 수를 재적위원수로 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별도 보관한다.

**제6조(심사기준 및 방법)** 정년보장 교원임용 여부 심사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사항을 참작하여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.

1. 교수 및 연구능력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능력과 자세
4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5. 학원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참여도

**제7조(심사대상)**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

해당되는 자로 한다.

1. 신규임용 후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정교수 <개정 2014.10.20.>
2.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수
3. 삭제 <2014.3.1.>

**제8조(정년보장 임용 제외자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임용교원에서 제외한다.

1. 교원인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해당자
2. 교원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해당자
3.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

**제9조(심사자료)**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승진 점수 충족 연구실적물
2. 교수업적평가 심사평정표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항의 입학처장 명칭은 ‘입학홍보1처장’,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‘기획처장’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항의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조정실장' 으로 개정한다.